

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4누162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담당변호사 신○○
피고, 항소인 ○○시 ○○출장소장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. 11. 7. 선고 2023구합72418 판결
변 론 종 결 2025. 9. 17.
판 결 선 고 2025. 11. 12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21. 10. 15.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, 이 사건 규정은 사회적기업법상 사회적기업이 그 '고유업무'에 '직접 사용'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, 위 '고유업무'는 '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목적에 관계된 업무'만을 의미하고, 위 '직접 사용'에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 원고는 일자리 제공형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위 목적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,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할 수 없다고 거듭하여 주장한다.

나. 판단



살피건대, 원심이 적절히 실시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, 원고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1)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'직접 사용'이 반드시 '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여 사용'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3238 판결,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있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,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(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원고의 사업목적에 '부동산 임대업, 주택 임대업'이 포함되어 있고, 이러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업에 제공한 이상 그 자체로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2) 또한 이 사건 규정은 문언상 업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규정의 '고유업무'의 의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문리적 의미를 벗어나 감면조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.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'육아맞춤형 사회주택'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고, 임차인 신청자격을 무주택자이자 청년 및



신혼부부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인 사람들로 한정하였는바,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행위가 사회적기업인 원고의 공익적 성격과 무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임○○

판사 나 ○

판사 송○○